

	원격교육지원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24
		제정일자	2021.09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교무처 (원격교육지원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목적과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
2. 원격교육역량제고 지원
3. 원격교육강좌 품질관리계획수립 및 관리
4.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운영지원
5. 삭제 <2023.03.01.>
6. 학습지원시스템(LMS)의 관리
7. 기타 원격교육 및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‘원격교육관리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23.03.01.>

1. 원격교육 실시에 따른 시기, 방법, 제반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버 및 S/W 도입에 관한 사항
3.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
4.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
6. 대학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3.03.01.>

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교육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소정의 정책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3.01.>

⑤ 위원회는 개설된 원격 강자를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 제출된 보고 자료는 원격교육 강좌 개설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. <신설 2023.03.01.>

제5조의2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,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교원, 학생,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8조(기타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